

98.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8. 6. 13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8. 6. 1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61회 부천시의회(입사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98. 6. 1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98.영세민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,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승인코자 함.(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)

나. 주요골자

98.영세민전세자금을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다음과 같이 승인 요구함

○ 자 금 명 :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

○ 지급 보증 금액 : 368백만원

○ 지급보증대상자 : 원미구 약대동 안기섬 외 92명

총 93가구 (원미구 42가구, 소사구 30가구, 오정구 21가구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중 부천시로 배정받은 98.영세민전세자금 368백만원을 관내 도시 영세민에게 주택은행을 통한 융자시 동 융자금의 결손 보전을 위한 보증채무를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의결로 동의를 얻고자 하는 행정절차임.
-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, 지방재정법 제10조 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98.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

의안번호	제388호
의결년월일	98. 6. 20 (제61회)

제출년월일: 1998. 6. 13

제 출 자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98.영세민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,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승인코자 함. (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)

□ 주요골자

98.영세민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다음과 같이 승인함.

가. 자 금 명 :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

나. 지급 보증 금액 : 368백만원

다. 지급보증대상자 : 원미구 약대동 안가집 외 92명 총 93가구 (원미구 42가구, 소사구 30가구, 오정구 21가구)

라. 융 자 금 지 급 : 한국주택은행(부천지점, 역곡지점, 원종지점, 심곡지점, 고강지점, 소사지점, 부천남지점 등)

마. 상 환 방 법 : 2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

바. 이 율 : 연리 3%

사. 지급 보증 기간 : 2년간 (단, 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신청자 1회 연장가능)

□ 제안본문

제 목 : 98.영세민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

가. 목 적

- 도시 영세 세입자의 주거 안전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함.

나. 지원방법

- 융자지원 규모 : 368백만원 (98. 부천시 배정액)

(※ 재원 :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)

○ 융자대상

-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
- 전세금 2,000만원 이하 (융자금 포함 2,700만원 이하)인 전세입자

○ 가구당 지원액 : 400만원 한도내

○ 대출금리 : 연리 3% (본인부담)

○ 상환조건 : - 2년 이내 일시상환 (전세 재계약서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가능)

- 자금관리 :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 관리

○ 구별 자금 배분액

구 분			배 정 액
계			368,000천원
원	미	구	165,000천원
소	사	구	120,000천원
오	정	구	83,000천원

다. 용자실시 방법

○ 용자업무 취급기관 : 주택은행부천지점 외 9개 점포

○ 시행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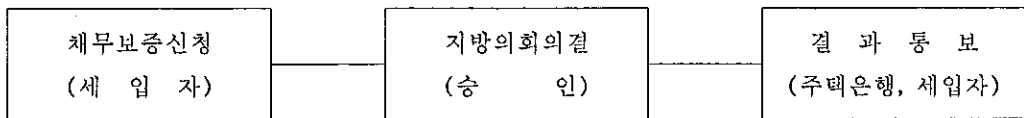
- 신청접수 : 98. 4. 20~5. 20(각 동)
- 개별실태조사 : 98. 4. 20~5. 20(각 동)
-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: 98. 5. 26일까지(각 구청)
- 지방의회의결 : 보증채무승인행위 승인
- 대상자 통보 : 의회 의결 후
- 용자실시 : 98. 6~12. 30

○ 용자계약 체결

- 계약당사자 :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
- 보증인 :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용자신청
-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 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체적 보증

라. 채무이행 보증절차

○ 근거규정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



○ 채무보증 내용

- 전세자금 용자금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 보존문제가 발생할 경우로
- 주택은행의 독촉장 발부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회수 가능 여부를 관할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 관계자를 직접 방문 확인한 후
-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존토록 하고
- 부천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

마. 기타사항

-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 용자금분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며
-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용자금 및 이자납입 상환실태 주거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함.